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안 번호	2477
----------	------

발의년월일 : 2013. 11. .

발 의 자 :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장

1. 주 문

-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13년 7월 15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14년 4월 30일까지로 5개월간 연장한다.

2. 제안이유

1. 주 문

-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인 서민 주거안정의 대책의 일환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의 시범지구를 지난 5월 20일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시 고잔역 일원도 다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사업면적 4만8천 m²에 1,500호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 이는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은 물론 논의 과정을 통해 전면 재검토 등 대책과 후속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되었으며

- 특히 우리시 고잔지구내 행복주택이 건립될 경우 완충녹지 훼손에 따른 도심녹지축 단절과 고층건물 축조에 의한 도시 스카이라인 문제발생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전체가 당초의 계획도시 구상과 맞지 않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47개 단지 재건축 사업과 중복으로 인한 주택보급과잉, 상가공실률 심화, 학교용지 확보 불가에 따른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등 집단적으로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 확산으로 지역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2013년 7월 5일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 26,191세대의 철회요청 서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는 기존 도시계획과의 조화,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와의 연계성 및 해법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행복주택 추진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의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주택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와 지역주민의 입장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 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행복주택 지구 지정에 대한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지구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복주택 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뒤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30일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